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6764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8241호	김민전의원	2025.2.18.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600호	서지영의원	2025.2.28.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8640호	조정훈의원	2025.3.4.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8818호	김문수의원	2025.3.11.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9193호	김용태의원	2025.3.20.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제12949호	조승환의원	2025.9.12.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5.11.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6.)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교육위원회(2025.11.27.)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학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생 략)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